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성주읍 경산사거리 633번지 외 6필지 ((舊)자동차 정비공장)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으로,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변의 주·정차 공간 확보와 교통체증의 해소,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편리한 교통시설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매입토지 및 건물

- 토 지 :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63번지외 6필지
- 건 물 :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63-1번지외 3필지상 건축물
- 매입면적 : 토지- 2,013㎡(608평), 건물 - 513.95㎡(155평)
- 추정가격 : 총16억원 정도(토지 15억2천만원, 건물 8천만원)

4. 기대효과

○ 도심지 공영주차 공간 확보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주민 편의도모

○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기초생활질서 지키기에 기여

○ 차량의 안정된 주·정차로 편안한 도심거리 조성

○ 재산내역

토지소재지			지목	면적 (㎡)	소유자	추정가액 (천원)	공시지가 (㎡/천원)
읍	리	지번					
계						1,602,980	
성주	경산	663	대	674	도호련외 2	343,300	㎡/134
		668-1	〃	625	이화자외 7	437,500	㎡/339
		668-2	〃	205	박석수	112,750	㎡/303
		669-1	〃	225	이화자외 7	202,500	㎡/688
		670-6	〃	251	이병두	376,500	㎡/1,100
		671-8	〃	7	도호련외 2	10,500	㎡/935
		672-5	〃	26	도호련외 2	39,000	㎡/1,840
건축물		663-1	건물	69.5	이병균	33,700	주택
		663-3	〃	331.7	이병두	17,738	공장,사무실
		668-1	〃	26.25	이화자	892	점포,창고
		668-2	〃	86.5	박석수	28,600	주택

5. 검토의견

□ **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출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.**

□ **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**

○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63번지외 6필지인 도심중심부 소재의 토지((舊) 자동자정비공장 부지)를 매입하여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증대되는 주차공간의 확보를 통안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편리한 교통기초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재산(토지 및 건물)의 매입이 필요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 현 성주군 성주읍의 도시기능의 원활한 기반을 위하여 **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용목적이 그 공익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**

□ 다만,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익의 효율성과 재산의 합리적사용에 대한 구체적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,

○ 특히,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기반 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산발적이고 중복적 투자로 인한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 계획 및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